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산림휴양과)
제출 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

제출일자 : 2021.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로 개정(안 제10조)

다. 조례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일간 실시예정

다. 예산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마. 규제영향분석 결과 :

바. 기타 관련사항 :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의 제공,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2. “원인자”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인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신청이 반려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원인자가 제3조에 따라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승인받은 경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등”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6(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업무 분야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마을안길 등에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의 제공,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2. “원인자”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

제3조(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법령, 조

기, 제거하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승인 등) ① 원인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승인신청이 반려된 경우 원인은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레, 계획 등과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군수가 한다.

③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가 제3조에 따라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승인받은 경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삭 제>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등-----

2. ----- 도시숲등

에 대한 자문

3. 도시립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5.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도시립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지역 군민단체가 추천하는자를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3. 도시숲등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도시숲등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

<신 설>

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신 설>

<신 설>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6(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리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업무분야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 소관 부서명 >

산림휴양과	
연 락 처	054-950-7421

관 련 법 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